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 개정 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7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지침 제46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중 휴가부여에 관한 사항 신설

부칙 (지침 제46호, 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